

문서번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2880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총장 방침 제(221)호

★주무관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부장	산학협력단장	교학부총장	총장
신유정	박재민	전종준	김정현	대결 박동주	12/30 서순탁
협 조	기술사업화팀장		나신철		
	경영지원팀장		양수정		
	정책기획팀장		대결양수정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2022년 제7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제7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년 제7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I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2. 12. 28(수) 10:00
- 심의방법 : 비대면 회의 후 서면결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심의안건	심의결과
(안건1) 2022년도 제1회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원안의결
(안건2)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안건3) 「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안건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기준」 개정(안)	수정의결
(안건5)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수정의결

II 심 의 내 용

【안건1】 2022년도 제1회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 추가경정예산편성(안) : 원안의결

□ 학교기업 「더고구마」

○ 세입예산 : 420,766,792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4,308,072원 증액(1.0%)

구 분	1차 추경(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수입	277,661,016	280,400,000	-2,738,984	-1.0
기본금변동수입	51,023,790	30,000,000	21,023,790	70.1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2,081,986	106,058,720	-13,976,734	-13.2
세입 총계	420,766,792	416,458,720	4,308,072	1.0

○ 세출예산 : 420,766,792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4,308,072원 증액(1.0%)

구 분	1차 추경(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지출	283,900,790	310,040,000	-26,139,210	-8.4
부채변동지출	60,549,406	16,086,260	44,463,146	276.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76,316,596	90,332,460	-14,015,864	-15.5
세출 총계	420,766,792	416,458,720	4,308,072	1.0

□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 세입예산 : 114,389,020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217,840,980원 감액(-65.6%)

구 분	1차 추경(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수입	82,358,945	250,000,000	-167,641,055	-67.1
기본금변동수입	6,966,205	60,000,000	-53,033,795	-88.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5,063,870	22,230,000	2,833,870	12.7
세입 총계	114,389,020	332,230,000	-217,840,980	-65.6

○ 세출예산 : 114,389,020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217,840,980원 감액(-65.6%)

구 분	1차 추경(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손익계정지출	51,913,870	266,100,000	-214,186,130	-80.5
자산변동지출	3,166,071	43,900,000	-40,733,929	-92.8
부채변동지출	46,809,079	6,730,000	40,079,079	595.5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2,500,000	15,500,000	-3,000,000	-19.4
세출 총계	114,389,020	332,230,000	-217,840,980	-65.6

□ 산학협력단

○ 세입예산 : 111,909,148천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14,975,742천원 증액(15.4%)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산학협력 수익	20,305,790,000	19,514,140,000	791,650,000	4.1%
지원금 수익	43,157,616,000	41,676,533,000	1,481,083,000	3.6%
간접비 수익	11,621,913,000	10,840,080,000	781,833,000	7.2%
전입및기부금 수익	0	0	0	0%
운영외 수익	430,000,000	391,000,000	39,000,000	10%
투자자산수입	4,523,892,318	2,500,000,000	2,023,892,318	81%
기초의 자금	31,869,937,161	22,011,653,000	9,858,284,161	44.8%
세입 총계	111,909,148,479	96,933,406,000	14,975,742,479	15.4%

○ 세출예산 : 111,909,148천원

- 2022년 본 예산 대비 14,975,742천원 증액(15.4%)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원)	본예산(원)	증감액(원)	증감율(%)
산학협력비	23,712,300,000	21,347,864,000	2,364,436,000	11.1%
지원금사업비	43,440,429,000	42,619,429,000	821,000,000	1.9%
간접비사업비	10,484,941,000	10,120,018,000	364,923,000	3.6%
일반관리비	116,400,000	116,400,000	0	0%
운영외비용	50,000,000	10,000,000	40,000,000	400%
학교회계전출금	220,000,000	220,000,000	0	0%
투자자산 지출	700,400,000	2,640,000,000	-1,939,600,000	-73.5%
기말의 자금	33,184,678,479	19,859,695,000	13,324,983,479	67.1%
세출 총계	111,909,148,479	96,933,406,000	14,975,742,479	15.4%

【안건2】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추진배경

-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활동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체계적인 산학협력 활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수익 창출 기여
- 서울시립대학교에 적합한 기업협업센터(ICC) 산업분야 발굴 필요
- 차기 LINC 사업 대비를 위한 연차별 ICC 프로그램 구축 필요

주요골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업지원본부 내 「기업협업센터 (Industry coupled Cooperation Center/ICC)」 설립
- 기업협업센터(ICC)의 기능 및 수익활동 근거 마련
- 기업지원본부 운영위원회 별도 구성
-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내 산학협력부 업무 명확화

【안건3】 「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 규정」 개정(안) : 원안의결

개정사유

- 운영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정비
- 상위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교내 규정을 반영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및 담당부서 현행화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개정방식: 전부개정

주요골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사항 반영
- 교내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부서별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제출서류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목적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안건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개정(안) : 수정의결

□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1. 1차 시행) 개정에 따른 해당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관련 양식 신설
- 중앙구매 집행절차의 계약서류 등 상위 규정 반영 및 신청시 필수서류만 제출토록 행정 간소화

□ 주요골자

-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대상 금액 확대 ⇒ 기존 금액의 2배씩 상향
- 수의계약 요청 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양식 신설
- 계약상대자(업체)와 계약 진행 시 계약방법(전자계약) 반영 및 구비서류 수정
- 중앙 구매 신청 및 정산서류 재정비

□ 심의결과 : 수정의결

- 사전예고 의견 반영: 중앙구매 금액 기준 변경

개 정 안				사전예고 의견사항			
□ 산학협력단 중앙구매기준 (부가세 미포함)				□ 산학협력단 중앙구매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 구매 대상	소모품 (재료 등)	비소모품 (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구분 \ 구매 대상	소모품 (재료 등)	비소모품 (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 총액 :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			
				2023년 예정된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침이 개정되어 중앙구매 기준 금액을 기존 부가세 미포함에서 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해야 함.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해당 사항으로 2점이 상향 조정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개정에 반영 필요			

【안건5】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 수정의결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변경심의 내용반영 및 관련양식 신설
- 기존양식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별표서식으로 같음하여 행정간소화

□ 주요골자

- 국가부처명 변경으로 인한 명칭 수정
- 연구장비심의 통과 후 변경 발생시 해당내용 추가
- 기존 ‘장비도입요구서’를 표준지침의 별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로 변경
- 심의결과 변경 신청서 양식 신설

□ 심의결과 : 수정의결

- 운영위원회 위원 의견 반영: 제3조 개정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액에 대한 설명 추가

개 정 안	심의결과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u>3천만원 이상</u>,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p> <p>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u>1억원 이상</u>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상정</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u>단가 3천만원 이상</u>,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p> <p>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u>1억원 이상</u>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상정</p>

Ⅲ

향 후 계 획

- 2022. 12.30(금):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총장승인)
- 2023. 1. 2(화)~: 규정 공포
- 2023. 1. 9(월) :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산서 제출

-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자료(별첨자료) 1부.
4. 회의록 1부. 끝.